

저소득층 전기설비 고장시 출동하여

응급조치하는 제도 등을 반영한 「전기사업법」 개정 완료

문의 |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 02) 2110-5445

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의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주거용 전기설비에서 공휴일이나 야간 등에 전기고장 발생시 전기안전공사가 긴급출동하여 무료로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응급조치제 도입,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제도 도입,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법령정비

- 정부(산업자원부)가 제출한 「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」이 지난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새해 1월초 공포 예정
-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및 취약계층 주거용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근거 마련 등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이번 개정내용에는
 - 전기사업자의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줄이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 투명화를 기하였고
 - 태풍, 폭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주거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한편,
 - 상용화를 앞둔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설비와 물리적 구동력이 없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전기재해발생 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상주 안전관리에서 대행제도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
 -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내실을 도모하도록 함.
- 동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자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

◎ 주요 개정내용

- ▶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등(제12조제1항 제4호 내지 제13호)
 - 전기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전기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, 명확히 규정함.
 - ※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정비 반영

- ▶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(제66조의3)
 - 태풍·폭설 등의 재난우려시설,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대상시설,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상시설, 국가 행사장 및 관련시설, 계절적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 - 또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시설에서의 전기사용상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- ▶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(제73조 제3항)
 - 『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태양의 빛 에너지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 선임토록 한 것을 대행도 가능 하도록 그 규제를 완화

- ▶ 전기안전관리자선임 및 해임신고 등(제73조의2제1항, 제73조의5제2항)
 -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
 -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변경등록·변경신고기한을 명확히 함

- ▶ 등록의 취소 등(제73조의6)
 -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사유 발생시의 행정처분을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완화

- ▶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·수행하는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(제73조의8)
 -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등록취소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이들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- ▶ 중대한 사고의 통보·조사(제96조의3 제2항)
 -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함

- ▶ 권한의 위임·위탁(제98조 제4항)
 - 기술기준의 조사·연구 및 개정검토에 관한 업무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

